자동차가압류신청

채 권 자 〇〇〇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9,034,999원(20○○. ○. ○.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가압류하여야 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채권자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가해차량인 서울 ○○마○○○○호 그랜져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신청외 ◈◈◈는 채무자의 아들 로서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입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사고의 발생

신청외 ◈◈◈는 20○○. ○. ○. 02:00경 ○○시 ○○구 ○○길 ○○ 노상에서

위 가해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채권자가 위 가해차량을 좀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신이 운전하던 위 가해차량으로 채권자의 무릎을 1차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양측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었습니다.

나.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신청외 ���는 자동차운전자로서 고의적인 사고로 채권자를 상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채권자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평균여명

채권자는 19○○. ○.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세 남짓. 평균여명은 ○○년 가량입니다.

(2) 직업 및 소득실태

사고당시 채권자는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일 금 〇〇〇원 상당의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3) 입원치료기간, 호프만지수

20 ○ ○ . ○ . ○ . ○ 20 ○ ○ . ○ ○ . ○ ○ . 까지(5개월 10일)
5개월 10일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 : 5.26364212{=5개월의 호프만지수+(6
개월의 호프만지수-5개월의 호프만지수)×10/30}

(4) 계산

금 ㅇㅇㅇ원×5.26364212 = 금 ㅇㅇㅇ원

나. 치료비

채권자는 위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시 ○○구 ○○길 ○○ ◎◎의원에서 입원치료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금 〇〇〇워

참작사유: 채권자의 나이, 직업, 신청외 ◈◈◈의 고의, 채권자의 가족관계 등 4. 결론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일실수입 금 ○○○원+치료비 금 ○○○원+위자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중인데 그 본안소송의 종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가 처분될 경우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1. 소갑 제2호증

1. 소갑 제3호증의 1, 2

1. 소갑 제3호증의 3

1. 소갑 제4호증의 1

1. 소갑 제4호증의 2

1. 소갑 제5호증의 1, 2

1. 소갑 제6호증의 1, 2

주민등록표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 진단서

입원 · 통원치료확인서

치료비계산서

치료비영수증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각 소명방법 각 1통

1. 자동차등록원부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 지 1]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서울ㅇㅇ마ㅇㅇㅇㅇ

형식승인번호 1-00187-0011-○○○

차 명 000

차 종 승용자동차

차대번호 KMHMF21FPVUOOOO

원동기 형식 G4CP

년 식 2000년

최종소유자 ◇◇◇

사용본거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 끝.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날인 또는 서명) 채권자(소송대리인)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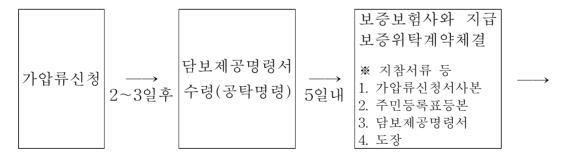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보아스소은 계기하 범위·사건범호·사건면으?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š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 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자동차목록 5부정도 첨부) 관 련 법 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등록면허세 : 15,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다목)				
기 타	·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을 사본하여 첨부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 목적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등록촉탁서상의 목적물 표시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또는 건설기계등 록원부등본의 갑부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재민 2003-4).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 ㅇ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다만, 임금, 영업자 예 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⁸⁾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 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